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창업지원공간 사용계약서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함)과 아티스틱허브 (이하 “입주자” 라 함)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지원공간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물의 표시)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2, LAS-lab

제2조(입주기간)

창업지원공간의 입주기간은 2024년 3월 1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입주자”의 부담금)

① “입주자”는 상기 입주기간 동안 창업지원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4조(“입주자”의 의무)

- ① “입주자”는 “사업단”의 규정을 따라야하며, 규정을 미준수할 경우 “사업단”은 “입주자”에게 서면 경고 3회 이후 중도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② “입주자”는 창업지원공간을 창업 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입주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입주자”는 창업지원공간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입주자”는 입주한 창업지원공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 창업자의 경우 30일 이내 등록, 예비 창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본점, 지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가능
- ⑤ “입주자”는 월 12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며, 사무실 규모에 맞는 상주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미 충족 시 “사업단”은 사무실 변경 및 퇴소처리 할 수 있다.
- ⑥ “입주자”는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단”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변경 통보 없이 평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시 퇴소처리 할 수 있다.
- ⑦ “입주자”는 캠퍼스타운사업단 입주기업으로서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⑧ “입주자”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사업단”이 요청할 시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 (ㄱ) 월별 창업활동 보고서
 - (ㄴ) 입주기업 매출 및 투자 현황
 - (ㄷ) 입주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력 현황
 - (ㄹ) 입주기업 지원사업 참여현황
 - (ㄴ) 기타 서울시 및 성균관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입주기업 정보 일체
- ⑨ “입주자”는 창업지원공간으로 도착한 우편물을 도착일로부터 1개월 내로 수령해야 하며 미수령 시 “사업단”은 해당 우편물을 폐기할 수 있다.

제5조(손해배상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와 관련된 참여인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창업지원공간의 시설이나 장비를 손상(화재, 파손, 망실 등)하였을 경우에 금전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시간)

“입주자”는 창업지원공간을 매일 08시부터 22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퇴실 또는 입주 공간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입주자”는 창업지원공간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단,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면책사항)

“사업단”은 “입주자” 또는 “입주자”와 관련된 참여인력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물품의 반출입)

“입주자”는 창업지원공간 내외로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등을 사전에 “사업단”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사용자 금지사항)

“입주자” 및 “입주자”와 관련된 참여인력은 창업지원공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①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물품,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 ②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 ③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및 제조, 판매하는 행위
- ④ 사업단이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하는 행위
- ⑤ 알콜성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일체의 유흥행위
- ⑥ 창업공간 내 숙박 및 취사 행위
- ⑦ 정식 등록된 팀 구성원 이외의 인원을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 ⑧ 유흥, 육설, 성희롱 등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 ⑨ 기타 “사업단”이 필요에 따라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
- ⑩ “사업단”에게 임대받은 입주계약서 상의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 ⑪ 임의로 냉/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⑫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 ⑬ 창업지원 전체 공간 내에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제11조(창업지원공간의 출입)

캠퍼스타운사업단 전담직원은 창업지원공간 내의 보안, 점검,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창업지원공간 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

-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주자”를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 (ㄱ) “입주자”가 입주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당해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ㄴ) 계약 및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각 센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ㄷ)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팀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 (ㄹ) 기타 “사업단”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
- ② 전항 ①항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단”은 “입주자”에게 해지사유와 해지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사업단”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입주자”는 그 희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입주공간에서 퇴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단”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만료 퇴소)

- ① “입주자”는 계약만료일인 2025년 2월 28일까지 퇴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계약만료일까지 “입주자”가 퇴소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 익일부터 “사업단”은 해당 입주공간을 폐쇄한다.

빙서류를 퇴소 후 10일 이내 “사업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4조(명도 및 원상복구)

- ① “입주자”는 계약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에 퇴거일까지 창업지원공간을 입주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고 “공간 담당 매니저 확인 후” 명도하여야 한다.
- ② “사업단”이 별도로 통보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는 본 계약서상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창업공간에서 퇴실하여야 하며 입주기간의 자동연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사업단”은 “입주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입주자”의 소유물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 처분할 수 있다.
- ④ “입주자”는 “사업단”의 제3항의 행위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 및 관할)

- ① 본 계약에 관하여 “사업단”과 “입주자” 간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 및 본 대학의 결정에 따른다.
-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은 “사업단”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관리기준 및 준칙)

- ①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 창업지원공간 운영 관리 기준 및 서울시, 자치구, 대학의 각종 관리기준에 따른다.
- ② “사업단”은 “입주자”의 재산보호와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 창업지원공간 내 각종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준을 제정, 시행, 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도 본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사업단” 과 “입주자” 는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3월 일

